

2026년 제1차 계약직원 자체채용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약직원 채용공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도민의 비즈니스 성공파트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함께 이끌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2026년 4월 17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채용예정인원

모집단위	직 급	채용분야	구분모집	근무예정지	채용예정인원(명)
총 계					5
1	계약직(경력)	경영지도	보훈	경기도 전역	2
2				평택 · 안성	1
3	계약직(신규)	새출발기금	보훈	수원 (재기지원센터)	1
4			장애인		1

※ 근무예정지는 재단 운용상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당 직무

구 분	채용분야	직무내용
계약직	사무직(경영지도)	· 컨설팅·신용보증·채권관리 업무보조 및 지원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채권관리 및 기타 부수업무 등
	사무직(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기업 관리 및 채권매각 관련업무 등

○ 계약기간 : 임용 후 2026. 12. 31. 까지 (평정결과 등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 보수 및 처우

- (보 수) 기본급,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수당 포함 연 3,600만원 수준(2026년 기준)
- (복리후생) 4대보험, 건강검진, 선택적 복지제도 등

○ 재단 관할구역 (경기도 전역)

- 본점(수원, 안양, 의정부), 남부영업본부(수원), 중부영업본부(안양), 동부영업본부(성남), 북부영업본부(의정부)
- 남부영업본부 소속 영업점·출장소(수원, 평택, 화성, 용인, 동탄, 안성, 오산)
- 중부영업본부 소속 영업점·출장소(안양, 부천, 안산, 시흥, 광명, 군포, 의왕)
- 동부영업본부 소속 영업점·출장소(성남, 남양주, 이천, 광주, 하남, 구리, 여주, 가평, 양평)
- 북부영업본부 소속 영업점·출장소(의정부, 고양, 김포, 포천, 파주, 양주, 원당역, 연천, 동두천)

2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 평가항목 :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등 응시자격 충족여부 → “적격자 전원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100점)
 - : 기본소양(20), 직무적합도(20), 직무수행능력(20), 인성적합도(20), 조직적합도(20)
 - 그룹 인터뷰(多대多 평가), 그룹별 최대 30분 이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평가점수 합산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단, 평가위원 과반수가 만점의 60% 미만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발생 시, 아래 기준(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 1) 관련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 장애인
 - 3) 저소득층
 - 4) 제2차 시험 평가항목 고득점자

(기본소양 → 인성적합도 → 조직적합도 → 직무적합도 → 직무수행능력 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퇴직 등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평가위원 과반수가 만점의 60% 미만의 점수를 부여한 자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결정)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보조자료 및 기구 지참 혹은 도우미의 지원을 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채용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채용분야	구분모집	자격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경영지도 (사무직)	보훈	① 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 ¹⁾ 중 어느 하나 이상에서 근무경력 3년 이상 ²⁾ 인 자 ②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만 60~64세 ³⁾ 인 자 ③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본인 차량을 활용한 출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출장비 별도 지급)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새출발기금 (사무직)	보훈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장애인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로서 '장애인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1) 경력 인정 대상기관은 불임에 기재된 기관에 한함
- 2)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명확히 기재된 경력만을 인정
- 3)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만 채용 가능, 내규에 따라 계약종료일은 65세 도달연도의 말일 초과 불가

나. 응시결격사유 등 : 채용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단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인사규정」 제14조(채용제한)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8. 재단 직원으로서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다.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채용공고일 기준) ※ 경영지도 분야의 경우 만 60세 이상

4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 ㉡, ㉢ 모두 충족 시 ㉠만 인정 • ㉠은 ㉡ 또는 ㉢ 과 중복(합산) 가능
㉡ 장애인	시험(과목)별 만점의 10%	
㉢ 저소득층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는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저소득층

-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로서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는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위 수급(지원)기간은 채용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수기로 수급기간을 기재하고 확인 날인한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6. 4. 17.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6. 4. 17. ~ 4. 27.
서류전형		2026. 4. 28. (예정)
면접시험		4월 末
합격자 임용		5월 初 ~ 5월 中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원서접수 (이메일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apply@gcgf.or.kr)

※ 반드시 첨부파일 포함 최종 발송 완료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6. 4. 17.(금) 10:00 ~ 4. 27.(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상기 전형절차 및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모집단위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4)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첨부파일 등을 추가 및 보완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7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 서류를 파일(xlsx, pdf, jpg 등)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별첨된 엑셀파일 양식으로 제출 必)**

②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증빙자료**

★ 경영지도(보훈) ☞ 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새출발기금 ☞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추가서류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자만 제출)

<제출예시1> 경영지도(보훈) 지원 시 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스캔본 각 1부를 입사지원서와 함께 제출(첨부)

<제출예시2> 새출발기금(보훈) 지원 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스캔본을 입사지원서와 함께 제출(첨부)

<제출예시3> 새출발기금(장애인) 지원 시 장애인 증명서 스캔본을 입사지원서와 함께 제출(첨부)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1)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응시원서 등에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 제출된 자격요건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주민등록 초본, 자격증 및 기타 면허증 사본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관련 증빙자료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향후에 제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자는 반드시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를 받은 후,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임용 예정일에 건강상의 문제, 기존 근무처의 면직불가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 입사 후에도 부정입사(당 재단 규정상 결격사유 해당 등)가 확인될 경우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담당자 이메일: yoohb7@gcgf.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차.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카.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붙임
경력인정 대상기관
【경영지도】 자격요건(경력요건)

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 중 어느 하나 이상에서 근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1) 경력 인정 대상기관은 아래에 기재된 기관에 한함
- 2) 근무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명확하게 기재된 내용에 한하여 인정함

연번	구분	대상기관
1	금융기관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금융기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금융기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금융기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
7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 품목조합, 농협중앙회
8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협 및 신협중앙회
9	금융기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10	금융기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른 우체국
11	금융기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2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13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4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5	금융기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사, 자산운용사
16	정책금융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17	정책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8	정책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9	정책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0	정책금융기관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21	정책금융기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22	정책금융기관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중소기업지원기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4	중소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